**부동산취득세**

**귀하께서 오사카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**

■**납세자**

부동산(토지나 가옥)을 매매, 증여, 건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분이 납부합니다.

■**납세액**

세액

부동산 가격(과세표준액)×세율

＝

**●부동산 가격(과세표준액)**

과세표준액이 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시정촌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. 단 택지나 주택비준토지를 2027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는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의 1/2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.

**●세 율**

다음 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종 류　　　취득일 | 토 지 | 가 옥 |
| 주 택 | 주택 이외 |
| **2008년 4월 1일∼2027년 3월 31일** | **３％** | **３％** | **４％** |

■**납부방법**

**납부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**

1. **부동산을 취득한 본인(귀하)께서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기 곤란한 경우**

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‘납세관리인신고서・승인신청서’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.

납세관리인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분이 일본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.

**신고에서 납부까지**

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본국내에서 신고 및 납부 등이 곤란한 분은 동봉한 ‘납세관리인신고서・ 승인신청서’에 ①귀하의 주소 및 성명 등 ②납세관리인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입 하여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.(아울러 동봉한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)

**Ⓒ2014 大阪府もずやん**

부세사무소는 납세통지서(납부서)를 납세관리인에게 송부합니다.

납세관리인은 송부된 납세통지서(납부서)로 납부기한까지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.

1. **본인(귀하)께서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우**

귀하께서 ‘부동산취득신고서’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.

후일 부세사무소에서 납세통지서(납부서)를 송부하므로 납부기한까지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.(일본국내의 주소 또는 일본에 오시는 날 등을 부세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.)

■**문의처**

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세사무소 담당에게 메일, FAX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 주십시오.(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문의하시는 경우는 답변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)